



소통하는 의정  
공감받는 의회

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
(제1차 교육위원회)  
2020. 1. 15.(수) 10:00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 
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  
수 석 전 문 위 원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 
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#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: 2020년 1월 6일
- 회부일자: 2020년 1월 7일

### 3. 제안이유

-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 및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를 반영하기 위하여 「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하고자 함

### 4. 주요내용

- 기관명 변경
  - 1)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(영동휴양소) →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영동휴양소
  - 2) 충청북도학생수련원(제천분원) →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
  - 3) 충청북도국제교육원 →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중부분원

#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개정 내용에 맞게 [별표] ‘특수지 근무수당(도서벽지수당)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 구분표’의 기관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,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